

울산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가단132694 판결 [대여금 및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박시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8.부터 2024.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3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9.경 원고가 양산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사장,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2022. 5.경에는 양산시로 이전하여 함께 금은방을 운영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거나 귀금속을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금 내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원고는 2022. 12.경 피고에게 귀금속 매수대금 명목으로 8,773,000원을 대여하였다.
- ②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변제받았으나 아직 1억 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다.
- ③ 원고는 2023. 5.경 피고에게 시가 61,535,500원 상당의 원고 소유 귀금속을 매도하였다.

나. 판단

① 대여금 8,773,000원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위 8,773,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한다(피고의 2024. 2. 29.자 준비서면 제3면 4행, 5행).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7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대여금 1억 원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당초 ‘원고가 2016. 9.경부터 2018. 2.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소장 제3면 6, 7, 8행), 그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 원고의 농협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중 2016. 6. 9.부터 2018. 2. 1.까지의 피고에게 송금된 돈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바, 원고는 그 형광펜 표시 부분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형광펜 표시 부분의 합계 금액은 1억 5,500만 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1억 7,000만 원에 미달한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 청구원인이 맞지 않는다.

이후 피고가 2024. 5.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대여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쌍방 송금된 금원을 모두 대여와 변제로 가정하더라도 그 차액은 39,014,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원고는 2010. 12. 15.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900만 원과 2023. 8. 17. 및 2023. 8. 19. 현금 내지 원고 친구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 합계 1,500만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시키면 남은 대여금이 103,014,000원(= 4,900만 원 + 39,014,000원 + 1,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전액을 모두 대여금으로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과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차액은 90만 원 남짓에 불과한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에서 일부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으로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갑 제24, 25호증을 제출하며, 피고도 원고 청구금원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녹취록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 나눈 대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주장 금원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귀금속 매매대금 61,535,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61,53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도하였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로 갑 제4, 5호증을 제출하고 있다(갑 제17호증은 갑 제4호증이 포함된 장부의 나머지 중 일부이고, 갑 제19호증은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한 진술로 원고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며, 갑 제18, 21호증은 원고와 피고의 대화를 들었다는 원고 지인의 사실확인서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4호증에는 ‘61,535,500원 금매입’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갑 제5호증에는 ‘22. 2. 24. 총계 30,000,— + 31,535,500 = 61,535,500 총계’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갑 제5호증에 ‘피고가 직접 적은 위 기재는 피고가 금은방을 개업할 때 지출한 비용을 적은 것이어서 원고와는 관계가 없다’(피고의 2024. 6. 24.자 준비서면 제16면 9행 내지 12행),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 갑 제4호증에는 피고가 원고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 갑 제5호증에는 ‘총 1억 6천 1백 5십 3만 오천 금값이랑 다같이’ 라고 추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 추가기재에 대하여 당초 원고는 ‘피고가 자필로 이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다가(소장 제4면 3, 4, 5행), 피고가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자 ‘위 기재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라며 주장을 변경한 점(원고의 2024. 5. 11.자 준비서면 제8면의 하단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 ○ 이와 같이 원고는 갑 제5호증을 원 · 피고가 함께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가 매수사실을 부인할까봐 피고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며 그 사진(갑 제20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22. 2. 24. 총계 30,000,— + 31,535,500 = 61,535,500 총계’라는 기재만 있는바,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문서를 원 · 피고가 함께 작성하여 둔 것이라면, 위

추가기재 또한 함께 작성되어 사진 찍혀 있었어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61,535,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가 407만 원 상당의 피고 소유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241만 원 상당의 피고 소유 귀금속을 손괴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운영 금은방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소유 귀금속을 절취 내지 손괴하였다거나, 그 영업양도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2024. 2. 5. 및 2024. 4. 6. 경남양산경찰서로부터 각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